

CATV전송기자재 품질인증방법에 대한 건의

본고는 CATV 전송기자재 품질인증방법을 턴키베이스식 즉 CATV광전송장치, 동축전송장치, 주전송장치, 케이블 등을 일체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어 이를 준비해 온 다수의 중소기업의 노력이 유명무실해져 동 품질인증방법에 대해서 CATV 전송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별로 시험인증해 줄 것을 지난 7월 13일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데이콤에 건의한 내용이다.

1. 건의 배경

정부의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실시는 고도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에 따라 대국민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국민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은 물론이고 정부 및 산업체에서는 국가의 기간산업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을 육성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적 통신산업 육성은 국가의 서비스 정책과 관련기기 및 시스템을 공급하는 산업체, 그리고 동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Need가 삼위일체 될 때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져, 국가발전에 기여된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이 가운데 귀공사는 서비스 실시를 위한 기기 및 시스템 수요기관으로서 국내 산업체를 육성 도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귀공사의 조달절차상에서의 추진방법은 국내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만약 동절차중 품질인증을 해주는 방법에 있어 턴키베이스식 즉 CATV 광전송장치, CATV 동축전송장치, CATV주전송장치, 케이블 등을 일체 구성하여 품질인증 검사를 한다면 외국의 거대기업 혹은 국내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동조달에 참여 기

회를 잊어버려 그 동안 이를 위해 준비해왔던 다수의 중소기업과 정책자금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관계 정부기관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제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 CATV기기산업협의회에서는 동품질인증 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CATV 광전송장치, CATV 동축장치, CATV 주전송장치, 케이블 등을 별도로 인증, 이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국내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배경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2. 건의 내용

첫째, 귀공사의 조달제도 및 방법 등은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품질인증 대상제품 등을 통합하여 인증시험 한다면 귀공사로는 행정적 편의도모 등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에 참여 못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극도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둘째, 시스템의 특징중에 하나는 연계파급 효과가 커서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만약, 시스템 통합인증을 실시할 경우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광전송시스템 등을 수입해서 설치하면 특성 및 성능 등을 고려하

여 이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품들을 수입하여 구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산업 육성은 커녕 외국기업에게 시장을 만들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최근의 이동통신산업의 경우가 그 좋은 예라고 생각되는데 외국 선진 이동통신시스템 설치후 단말기까지 시스템설치 외국회사에서 국내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재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이동통신 산업계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해 발버둥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전송기자재에 대한 균등한 품질을 유지키 위해 물품별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품별 시험인증을 통한 시스템 구성시 기술 및 운영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예를 들어 귀공사(한국통신)가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조달되는 통신기기 및 시스템의 소요 부분품들을 최근에까지 인증해오면서 동 인증된 부분품들로 구성된 통신기기 및 시스템을 공급 받아 왔던것 처럼 CATV 전송시스템의 경우도 동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품별로 시험인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부분품별 인증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길이다. 최근 신정부의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육성대책 수립을 통한 정책운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인증방법은 중소기업에게 큰 활력 소가 될 것이다.

대정부 건의 ②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관세 면제 및 PC 주기판 조정관세 적용기관 연장 건의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관세 면제 건의〉

1. 건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의 컴퓨터산업은 국제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수출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내수 시장의 침체로 산업의 존립마저도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됨에 따라 신정부에서는 정보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개인용 컴퓨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앙처리장치(CPU)는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전체 시스템 가격중 20~40%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기술 및 특허는 미국의 Intel사를 비롯

한 2~3개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개발이 곤란함으로(CPU에 있어 후발업체인 미국의 AMD사에서 80386 CPU를 개발하였으나 Intel사의 제소로 법원으로부터 생산정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컴퓨터 제조기업들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건의 내용

이에 본회는 사실상 국내생산이 어려워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CPU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산업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이라 판단되어 컴퓨터 업계의 제조원가를 경감시켜 국제 가격경쟁력을 제고, 수출을 증대하며 CPU에 대한 현행 관세(9%)를 면제시

켜 주실 것을 건의 하는 것이다.

〈본고는 본회가 '93년 7월 19일 상공자원부, 재무부 등에 전의한 내용이다.〉

〈PC 주기판 조정관세 적용기간 연장 건의〉

1. 건의 배경

본회는 지난 '91년 10월, PC 주기판산업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대만 등 외국산 PC 주기판 수입 급증에 따른 우리 관련산업의 폐해가 심각해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 구제 요청을 하였던 바, 동위원회는 우리 산업의 피해를 인정하여 '92년 5월 11일부터 '93년 말 까지 조정관세율(20~25%)을 적용토록 하고 기술개발 지원 등 조치를 취함에 따라 최근 주기판의 수입량이 감소되고 국내 PC주기판 산업은 어느정도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PC주기판은 전체 수요의 4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PC주기판의 국제가격이 계속적으로 인하(386 기준 '92년말 93불→'93년 5월말 76불)되고 있으며 우리 PC주기판업계는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써 업계의 공동개발(노트북 PC 등)사업실시, 국내외 전시회 공동참가 등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관세율이 환원(8%) 된다면 모처럼 마련된 산업기반이 또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2. 건의 내용

본회는 이 경우 우리 정보산업 및 중소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아 정보산업의 기반이 되는 PC주기판산업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실행하고 있는 PC 주기판 조정관세 기간을 '93년말에서 '95년말 까지로 연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것이다.

〈본고는 '93년 7월 19일 본회 컴퓨터산업협의회에서 상공자원부, 재무부, 무역위원회 등에 전의한 내용이다.〉

대정부 건의 ③

소음·진동 규제법 개정 법률(안)중 소음 표지제 도입에 따른 건의

본고는 본회가 소음·진동 규제법 개정법률(안) 내용중 소음표지 부착제도 도입과 관련 개정(안)에 대해 지난 7월 28일 상공자원부, 환경처 등에 전의한 내용이다.

1.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내용중 제7장 소음표지제 부착제도 도입 관련조항 삭제 건의

○ 사 유

- 1)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목적은 대다수 국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소음문제의 근

원적인 해결을 위한 사전 예방적인 규제수단인 바, 그 대상인 고소음 기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이미 품목확대 및 기준을 강화토록 되어 있어 여타의 소음발생 기기에 대하여 소음표지제 부착제도를 도입하여 규제할 필요가 없다.

- 2) 소음표지 부착제도 도입의 또 다른 목적은

당해 기기 제조자에게 저소음 제품개발 유도 및 소비자의 구매정보제공을 하는데 있다고 보는 바, 가전제품 제조 메이커는 소비자의 Need을 중시한 저소음제품 개발을 자체연구소에서 세계 일류화 제품 생산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동제도 도입의 의미가 없으며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

- 3)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소음정도는 매우 낮아 사용자 이외의 주거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법으로 규제해야 할 정도가 아니다.
- 4) 가전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공업 표준화법에 의해, 소음규준치를 정하여 규제되고 기준미달시 판매가 불가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바,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일원화 되어야 한다.
- 5) 소음표시제도는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오로지 독일의 경우만 제품사용 설명서에 명기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 6) 상기 사유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실용성이 거의 없는 소음표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간의 과당경쟁 유발 및 투자가 수반되어 신정부의 각종 행정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소음진동 규제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총

○ 주요 가전제품의 한국표준공업규격(KS) 소음 측정기준

| 제품명 | 측정 조건 | | | 측정 방법 | | 판정 기준 |
|-----|----------|--|----------|--|--|-----------------------------|
| | 측정 장소 | 무향실 또는 세탁기 운전시 가장 가까운 벽 옆의 소음은 측정 소음보다 10dB작을 것 | 측정 위치 | 제품의 각표면 중앙 100 cm거리에서 전우, 좌 3면 측정 | | |
| 세탁기 | 세탁 부하 | 표준세탁량, 표준수량 투입. | 측정 방법 | 세탁 · 탈수시 3면의 소음 값 측정후 평균하다. 탈수시는 4회 측정후 탈수시는 4회 측정후 | | 측정점 모두 세탁, 탈수 65dB 이하일것. |
| | 탈수 부하 | 표준탈수 용량의 세탁 물을 물에 적신후 탈 수조에 균일하게 투입 | | | | |
| | | | | | | |

리령)제정시 소음표지 부착의무 대상 기계중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믹서기 등 가전제품은 제외 건의

○ 사유

- 1) 가전제품은 사용시간이 짧으며 주로 주간에 사용하고 설치 장소가 다용도실, 주방 등이며, 소음수준도 낮아 주민생활 환경 저해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 된다.
- 2) 소음표지 부착 예상기계로 예시한 가전제품은 일반가정(50~55dB)의 평균 소음 수준이하이므로 그 대상 기기로 볼 수 없다.
- 3)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은 주부들의 가사 노동 경감과 생활 필수품으로 정착되어 있고 기술 발전 속도도 날로 진보되어 세계 일류화 제품을 추구하고 있으며 가전업계의 판매 전략도 환경을 고려하고 재활용 용이화를 위한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업계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
- 4) 또한 소비자의 구매 성향도 제품의 우수성, 편리성, 제품성능(소음 등)을 비교하여 선택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제도적 장치인 소음표지 부착 의무화 대상 기기로 정하여 규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요청한다.

| 제품명 | 측정 조건 | | 측정 방법 | | 판정 기준 | | |
|-----------|-------|---|-------|---|---|-------|-------|
| | 제품 설치 | 두께 5~10mm정도의 FE LT 등을 깐 견고한 시험대 | | | | | |
| 에어콘 | 측정 장소 | 무향실(측정치와 8dB 이상 차가 있을것) | 측정 위치 | 분리형 실내기 전면중앙 100cm거리 80cm : 하부 분리형 실외기 상치형, 창문형 전면중앙 100cm | 냉방 능력 | 분리형 | 창문형 |
| | 온도 조건 | 실내기(27°C/19.5°C) 실외기(35°C/24°C) (건구온도/습구온도) | | | 2240KL | 52/55 | 62/67 |
| | 제품 설치 | 실제 제품설치 조건 | | | 3550 | 55/60 | 65/70 |
| 진공 청소기 | 측정 장소 | 무향실(암소음과 동작 소음의 차가 10dB이상) | 측정 위치 | 상 · 측면 100cm거리 | 4400 | 60/65 | 67/72 |
| | 제품 설치 | 두께 60mm의 우레탄 폼위에 설치 흡입구는 바닥에서 10cm 연장관은 200cm 연장 | 측정 방법 | 상 · 측면 2개소 측정치의 평균 값 | (단위 dB 이하) | | |
| | 제품 설치 | 두께 30mm의 나왕판 위에 두께 5mm의 FELT | 측정 방법 | 전 · 측면 100cm거리 | 정격 소비전력 1.5kw 이하 : 70dB 이하 (형식승인 기술기준) 700W : 70㏈ 이하 700~1,000W : 75㏈이하 | | |
| 전기 쥬서/ 믹서 | 측정 장소 | 30dB이하인 무향실 | 측정 위치 | 전 · 측면 100cm거리 | 믹서 : 78dB 이하 쥬서 : 75dB 이하 | | |
| | 부하 | 믹서 : 표준측정 상태 쥬서 : 무부하 운전 | | | (형식승인 기술기준 KS와 동일) | | |
| | 제품 설치 | 두께 30mm의 나왕판 위에 두께 5mm의 FELT | | | | | |

○ 제품별 선진국 대비 소음 비교 현황

| 제품명 | 구 분 | 우 리 제 품 | 일 본 제 품 |
|-----|--|--|---|
| 냉장고 | 420 L | A점 : 42 B점 : 30.50 | A점 : 42 B점 : 30.5 (도시바, GR-W40NVI) |
| | 600 L | A점 : 42 B점 : 31 | A점 : 43.8 B점 : 28.8 (미찌비시, MR-50K) |
| 에어콘 | 분 1800KW 리 2800KW 형 3550KW 4800KW | 실내43/실외51 △ 47/△ 58 △ 47/△ 58 △ 48/△ 64 | 39/43(도시바,RAS-S201Y) 43/45(도시바,RAS-321UTR) 47/54(마쓰시다,CS-G40V2) 50/51(도시바,RAS-502PTCR) |
| 세탁기 | 세탁용량 7Kg | 틸수소음 : 48 | 틸수소음 : 50 (마쓰시다,NA-F70Y5) |
| | 세탁용량 8~9KG | 틸수소음 : 55 | 틸수소음 : 47.5 (미찌비시,AW-AA80) |
| 청소기 | 최대소음 | 63 | 59 (마쓰시다, MC-S80VP) |